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2 - 0054호

(예비)사회적기업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의 수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4.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들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을 통해 연대와 협력 기반의 경영 전략 구축 지원
 - 참여기업들 간의 명확한 목표 공유, 역할 및 책임 배분 등 협업 내실화를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 구축 지원

나. 지원 내용

- 2개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간 연대·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전략 구축을 위한 공동 컨설팅 지원
 - 다수의 (예비)사회적기업이 공동 사업 및 전략을 구성하여 실효적인 협업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
 - 협업 구축과 더불어 명확한 목표와 장기 비전 수립, 역할과 책임 배분 등 협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과제 적극 발굴 예정
 - * 협업사업 예시: 공동 사업 구축/운영, 모델 복제 및 확산, 사회적가치 제고 등
 - 기존에 협업 활동 경험이 있는 네트워크가 컨설팅 및 시범 사업을 통해 고도화를 도모하는 경우 선정심사 시 우대

- (컨설팅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등록 및 승인이 완료되어 전문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모든 유형의 컨설팅기관 참여 가능,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는 적극 발굴 예정
 - *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정관상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을 설립 목적 또는 주요 사업으로 명시한 법인(사업운영지침 제24조 ① 3.)
- (연대협력 사업비 지원) 컨설팅 수행 중 협업 사업의 구체화, 시범 운영, 참여 기업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총 사업비의 50%를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협력 사업비로 편성하여 하고,
 - 최종 컨설팅 지원 협약 종료 전까지 계획한 연대협력 사업의 성과물을 도출하여야 함(제품 및 서비스, 공동 활동의 성과 등 도출)
 - * 예시: 수진기업 간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홍보 활동 성과, 공동사업 개발/발굴에 필요한 연구조사 성과, 공동 상품 및 서비스 도출 등
- (지원한도) 컨설팅 과제당 최소 2천만 원~최대 4천만 원 이내
 - 사업비 총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이며,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산출된 신청기업(수진기업)의 자부담 금액을 포함함
 - 총 사업비는 컨설팅 비용과 연대협력 사업비로 구성
- (연계사업 정보 제공) 컨설팅 이후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 부처 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컨설팅 이후 활용도 제고를 지원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추진 절차>

사전상담	신청·접수	선정심사	계약체결	착수 워크숍	모니터링·평가	사업비 정산
컨설팅 적합유형, 주제 등 상담지원	사건 자율매칭	신청기업/컨설팅기관 대면평가	컨설팅 수행 협약	사업 안내 및 컨설팅 활용 교육	모니터링/완료점검/최종평가	연대협력 사업비 사용 결과 점검
진흥원	신청기업, 컨설팅기관	평가위원회	수진기업, 컨설팅기관, 진흥원	수진기업, 컨설팅기관	진흥원, 지원기관	진흥원, 기업·기관

2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수진기업 공모 내용

- (지원 대상) 총 예산 236,000,000원 내외, 7개 내외 컨설팅 과제 지원
 - 1개 과제 당 2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 기업 중 SEIS 등록 등 행정절차를 총괄할 총괄기업을 지정하여야 함
- (지원조건)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구 분	지원금	기업부담비율	컨설팅 수행기간
사회적기업	제한 없음	계약(신청)금액에 따라 10~40%	~11.04.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000만 원 이내	(세부 계산방법 산출방식 참조)	

※ 신청기관은 2022년 11월 4일 이전까지 컨설팅 과업이 종료되는 일정으로 수행계획과 예산 규모를 수립하여야 함

- (예산 산출) 컨설팅 비용 50% + 연대협력 사업비 50% 구성
 - * 산출식에 따른 계산 편차를 고려하여 5% 이내 구성비 변동 가능
 - (컨설팅 비용) “컨설턴트 등급별 단가×컨설팅 투입일(MD)” 총 합계
 - (연대협력 사업비) “【별첨】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관리 기준”에 따라 지정된 분류 내에서 집행 항목을 구성
 - * 컨설팅기관은 연대협력 사업비의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를 상시 관리하고, 진흥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총액과 컨설팅 비용, 연대협력 사업비 구성 후 기업별 자부담 금액을 산출(아래 내용 참조)

<사업비 산출 예시>

- <사례1> 총 사업비 2,000만원, 참여기업 수 10개소
- (기업별 사업비) 2,000만원 ÷ 10개소 = 200만원
 - (기업별 자부담금) 200만원 × 10% = 20만원
 - (총 자부담금) 20만원 × 10개소 = 200만원 → **총 자부담율 10%**
- <사례2> 총 사업비 3,000만원, 참여기업 수 4개소
- (기업별 사업비) 3,000만원 ÷ 4개소 = 750만원
 - (기업별 자부담금) (500만원×10%) + (250만원×20%) = 100만원
 - (총 자부담금) 100만원 × 4개소 = 400만원 → **총 자부담율 13%**

※ <참고> 기업별 자부담금 산출방식

기업별 사업비	비율	산출방식	최대 자부담금
500만원 이하	10%	사업비 × 10%	50만원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0%	{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20%)}	250만원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30%	{2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30%)}	550만원
2,500만원 초과	40%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 × 40%)}	산출식에 따름

- ※ 반드시 별첨하는 “자부담금액 계산기.xls”를 사용하여 자부담 금액을 확인
- ※ 신청기업(수진기업) 간에 협의에 따라 기업별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 단, 긴급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경영상 애로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에 1회 기업부담금 면제 가능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시·군·구·읍·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간접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또는 지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 기타 진흥원장 또는 경영컨설팅평가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 할 경우

□ (신청·접수 마감) **공고일 ~ 5. 3. (화) 17:00 까지**

○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 신청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pdf”(별첨) 참조, 신청 마감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 마감 2~3일 전 신청 요망
- ※ 참여기업 중 총괄기업의 계정으로 SEIS에 로그인하여 신청

○ (유의사항) 사회적기업은 신청 전에 진흥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Pool에서 컨설팅기관을 섭외하여 매칭 하여야 함

○ 구비서류(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첨부파일 등록)

1. 컨설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작성) 1부
2. 신청기업 컨설팅 수요 기술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참여기업 명단 【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6-1호 서식】 【별지 제6-2호 서식】 각 1부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7-1호 서식】 【별지 제7-2호 서식】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9. 총괄기업의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결산 완료된 최근 연도부터)

- ※ 6번, 7번 서류는 신청기업, 컨설팅기관 서류를 함께 압축(zip)하여 첨부
- ※ SEIS 시스템에 별도의 제출 서류 첨부 칸이 없는 서류들은 “그 외 제출 서류(기타)” 항목에 압축(zip)하여 첨부

3

신청 시 유의사항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컨설턴트 1일 기준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VAT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컨설팅 기관 소속의 상근 컨설턴트(2등급 이상)가 담당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이 전체 투입일수의 70%이상이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동일 일자에 동일 내용으로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최상위 등급 컨설턴트를 제외한 그 외 컨설턴트 MD는 불인정(단, 수진기업과 협의를 통해 현장 투입일의 50%(전체 투입일 35%)까지 비대면 화상 컨설팅 활용 가능)
 - 컨설팅 과제 준비, 연대협력 사업의 관리 등 행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 투입일 수의 30% 이내에서 내근 투입을 편성할 것
- 컨설팅기관은 참여컨설턴트가 사업연도 내 컨설팅 지원사업의 투입 일수가 총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투입인력 등을 조정하여야 함
- 참여 컨설턴트는 1일 1개 수진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제책임자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비상근 컨설턴트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40% 이내에서 인정
- 참여 컨설턴트는 본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아래의 경우 면제 가능
 - 진흥원 컨설팅 사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컨설팅기관 중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기관 소속 컨설턴트(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
 - 직전년도 컨설팅 수행결과 종합 점수가 상위 10%인 컨설팅기관 소속 컨설턴트(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
- 교육자료 개발, 매뉴얼 개발, 타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단순 유통채널 확보, 기초컨설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일부 주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드시 공고된 “사업비 관리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선정 이후 또는 사업 참여 중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진흥원에서 수정·보완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당해연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진기업
- 당해연도 컨설팅기관으로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최대 5회)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라)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마)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4 수진기업(지원대상) 선정 절차

□ 선정 일정

- 신청한 컨설팅 주제 및 과업에 대하여 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책임자가 참여하는 최종평가(PT평가)를 거쳐 수진기업 선정 실시
 - ※ 공고 종료 후 1주 내외에 PT평가 실시 예정(구체적 내용 신청기업 개별 추가 안내)
 - ※ 단, 지원규모에 따라 최종 PT평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PT평가 일정 조정 시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 최종 PT평가는 온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안내 별도 공지
- **(결과발표)** 심사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 **(유의사항)** 평가 시 사회적기업(총괄책임자)과 컨설팅기관(과제 책임자)이 공동으로 배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발표
 - 총괄기업의 담당자 이외 참여기업의 담당자도 참석 권고
 - ※ 선정평가 시 사회적기업의 대표(또는 지정한 대리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 **(최종선정)**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지원예산 규모 및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점(최종평가 점수+우대가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수진기업(지원 대상)을 선정함

- 최종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컨설팅 내용 및 기간, 투입인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에 도달하지 않는 수량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추가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신청기업 (사회적 기업)	목적 및 추진의지 (30)	신청기업 간 협업 수요의 명확성	10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10
		신청기업의 협업 및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10
	결과의 활용가능성 (10)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10
	소 계		40
컨설팅 기관 (컨설턴트)	수행방안 (25)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10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KPI) 적절성	5
		협업의 개선, 고도화 방안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5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5
	사업관리방안 (15)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10
		협업의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5
	사업예산 (5)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투입일) 산정의 적절성	5
	사업완료 (15)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5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절성	10
	소 계		60
총계		100	

5

선정 이후 행정 사항(계약 체결 및 컨설팅 수행)

□ 최종 수진기업 선정 이후 사업 수행 절차

① 착수 워크숍(교육) 참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사업 안내, 협업 역량 증진 등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워크숍에 필히 참가하여야 함
- 원활한 협업 촉진 등 효과적인 컨설팅 효과 달성을 위한 전문 워크숍 및 사업 절차, 행정사항 관련 안내 실시 예정

② 진흥원·수진기업(사회적기업)·컨설팅기관 간 수행 협약 체결

- 진흥원·수진기업(총괄기업)·컨설팅기관 간 3자 협약체결

※ 총 수행 협약기간: 2022.11.30.까지(최종평가 및 정산 등 행정절차 포함기간)

③ 컨설팅 착수 및 수행

※ 컨설팅 과제 투입은 2022.11.04.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함

④ 모니터링 및 점검(진흥원, 운영지원기관)

-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 일정 및 컨설팅 계획을 바탕으로 컨설팅 진행 경과에 대한 정기·상시 점검 실시

⑤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성과 확인 및 비용 지급

- 수행일지 등 컨설팅 수행 중 진행 경과 관리, 중간·완료 평가 등을 종합하여 컨설팅 성과 확인 및 보완 실시
- 수진기업, 컨설팅기관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현황을 중간·완료 평가 시점 시 진흥원에 보고하고, 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함

⑥ 컨설팅 비용 지급

- 진흥원은 컨설팅 비용 총액 70% 이내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컨설팅 성과 확인 및 보완을 거쳐 잔금을 지급함

⑦ 자치단체, 부처별 사업 연계 정보 제공

- 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 부처 사업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을 통해 컨설팅 이후 활용도 제고를 지원

6

기타 안내사항

□ 추가 공고 및 지원사업 선정 규모

- 예산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추가 공고 실시 가능
 - '22년 총 7개 내외 컨설팅 과제 선정 및 지원 예정
 - * 총 예산 236,000,000원 내외(수진기업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금 기준)

□ 문의처

- (공고 및 사업 수행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성장팀
 - 031-697-7852 / jwhong@ikosea.or.kr
- (접속장애 및 로그인 등 오류 문의) 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
 - 1661-4006

□ 기업 정보 및 컨설팅 사업 내용 관련 활용 안내

- 진흥원은 본 사업 참여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계사업 정보 제공, 우수 컨설팅 성과 또는 사회적가치 사례 발굴·확산 등의 사업성과 및 제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 사회적기업 및 컨설팅기관의 사업 개요, 컨설팅 과제 성과 등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하며, 공고사항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수진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있음

참고 1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추진 절차

단 계	수행방법
컨설팅기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컨설팅기관→진흥원) ○ 컨설팅기관의 자격 및 요건 검토 및 등록 승인(진흥원, 지원기관)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상담 실시(신청기업→진흥원) ○ 컨설팅기관 매칭지원(진흥원, 지원기관) ○ 수행계획서 작성(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협의) ○ 경영컨설팅 신청(신청기업→진흥원)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신청기업,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진흥원)
지원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계약 체결 및 전략공유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수진기업, 컨설팅기관 3자 계약 체결 ○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공유 워크숍지원 (컨설팅기관, 수진기업, 진흥원)
사업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금 지급(수진기업 → 컨설팅기관) 확인
중간 보고 및 중간(수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일마다 수행일지 작성(컨설팅기관) ○ 중간보고서 제출(컨설팅기관) ○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실시(진흥원) ○ 중간만족도 조사(수진기업)
완료 점검 및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서 제출(컨설팅기관) ○ 완료보고서, 수행일지 등을 근거로 완료점검 실시(진흥원, 지원기관) ○ 최종만족도 조사(수진기업)
사업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지급 통보(진흥원→컨설팅기관) ○ 사업비 지급 신청 및 지급(컨설팅기관, 진흥원)
상호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참여 기업·기관별 상호평가 시행 (컨설팅기관, 수진기업) ○ 컨설팅 평가 등급 산정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점검 점수(70%)+만족도 점수(30%) ○ 우수사례 발굴

참고 2

수진기업 선정 평가표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선정 평가표

신청기업명			
평가일	20 . . .	평가위원	(서명)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점
신청기업 (사회적 기업)	목적 및 추진의지 (30)	신청기업 간 협업 수요의 명확성	/ 10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10
		신청기업의 협업 및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 10
	결과의 활용가능성 (10)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 10
	소 계		
컨설팅 기관 (컨설턴트)	수행방안 (25)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 10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KPI) 적절성	/ 5
		협업의 개선, 고도화 방안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 5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 5
	사업관리방안 (15)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10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 5
	사업예산 (5)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투입일) 산정의 적절성	/ 5
	사업완료 (15)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 5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절성	/ 10
	소 계		
합 계			/ 100
평가의견			

참고 3

컨설턴트 등급 및 기준

□ 학력 및 경력기준

- 컨설팅 수행이력의 증빙 기준은 최초 학사학위 취득일 이후의 컨설팅 기간을 정수단위로 산정한다.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단가 (VAT포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774,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629,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484,000

* (예시)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사실과 학사학위 수여일 이후 6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이력이 있으면 인정

□ 자격 및 경력기준

등급	자격 및 경력기준	단가 (VAT포함)
1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774,000
2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629,000
3	·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	484,000

□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

등급	자격 및 경력기준	단가 (VAT포함)
1	· 없음	774,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 ·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629,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5년 이상) ·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84,000